

## 정책소개

# 2015년도 상반기 사료관리법 하위 고시 개정 안내



정 순 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주무관

- 유해물질 관리기준 등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농가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 및 안전성 관리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가품질 검사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사료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 하위 고시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 개정(안)
  -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 등의 구체적 물질과 유형별 권장유통기간, 명칭 세분화 기준 등을 안내하여 민원인 등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감사원의 축산물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처분 요구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조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운영과정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 등의 구체적 물질을 고시에 추가하여 민원인 등의 이해도 제고(안 제3조, 제4조, 제5조의2, 제7조)
  - 사료의 유형별 권장유통기간을 설정하여 사료의 안전성과 민원인 등의 이해도 제고(안 제9조제6항)
  - 사료의 명칭을 세분화하는 기준을 보완하여 단미·보조·배합사료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민원인 등의 이해도 제고(안 제9조제10항)
  - 성분등록 기본 요건표를 안내하여 민원인 등의 이해도 제고(안 제9조제11항)
  - 성분등록 및 표시·광고에 대한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 등의 이해도 제고(안 제9조제11항, 제10조)
  -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류에게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안 제11조제4항, 제6항)
  - 동물성단백질류 사료의 멸균 및 살균 조건을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조정하고,

애완동물용 사료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안 별표 9)

- 유기사료에 대한 인증 및 성분등록제도를 정비하여 유기사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안 별표 10)
- 옥포 등 원료를 균질하게 혼합하여 제조하지 못하는 사료에 대한 등록성분 등록 및 표시를 면제하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제공 차단(안 별표 11부터 별표 13)
- 사료의 등록성분의 함량 수준 등의 기준을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여건 마련(안 별표 13의2)
- 기타 표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민원인 등의 이해도 제고(안 별표 15)
- 사료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감사원의 축산물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처분 요구한 바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조정하여 안전성 관리를 강화(안 별표 16, 별표 20)

□ 「사료검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 사료별 현물검사 주요 검정성분 및 검사기준 등을 최근 경향치를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관리체계는 강화하면서 제조업자 등의 부담은 완화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사료검사기관(시·도지사)이 사료검정

기관을 확보하여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 제5조)

- 사료별 현물검사 주요 검정성분 및 검사기준 등을 최근 경향치를 반영하여 현실화하여 안전성 관리체계는 강화하면서 제조업자 등의 부담은 완화(안 제13조)
- 제품명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기준, 배합비, NIR방법, 신속 키트방법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성분 표시를 제외한 사료(옥포 등)에 대한 사료검사 면제와 HACCP 지정 사료공장에 대한 사료검사 면제 우대 조치 마련(안 제13조, 별표 2)
- 등록성분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한 허용오차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제공 여건 마련(안 별표 4)
- 수입신고 위탁업무에 대한 업무정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국경단계의 안전성 관리체계 강화(안 제23조, 별표 4의3)
- 정밀검정 대상 사료에 대한 중점 관리성분과 정밀검정 같음 등의 기준을 정하여 수입사료의 안전성관리를 강화하되, 수입업자의 부담은 완화(안 제25조 제1항부터 제4항, 별표 5의2)
-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정결과를 사료검정증명서를 통해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업자의 편리 도모(안 제25조제5항)

-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인이 자체 점검해야 할 기본요건 점검표를 안내하여 수입신고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안 제25조제6항, 별표 5의3)
- 제품명에 따른 수입신고 기준을 마련하여 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 하고, 사료의 안전성 관리체계 정비(안 제25조제7항, 별표 5의4)
- 사료검정 인정기관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수입사료에 대한 검정증명서 발급체계 구축(안 제27조, 별표 6의3)
- 검정기간을 단축하여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있는 사료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입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1조)
- 동물성단백질류의 함유여부에 대한 종합판정 기준을 조정하여 교차오염을 최소화하여 BSE 발생원인 차단(안 제32조)

#### □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 HACCP 지정 사료공장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고, 애완동물용 사료 중 간식용·영양보충용에 적합한 실시상황 평가표를 보완하여 사료공장 HACCP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과정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HACCP 지정 사료공장에 대한 사료검사 면제 검정항목 및 기간을 확대하여 우대조치 강화(안 제12조)

- 배합사료공장 실시상황 평가표를 보완하여 애완동물용 사료 중 간식용·영양보충용 등에 대한 사료공장 HACCP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별지 제1호 서식)
-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등의 평가표를 보완하여 섬유질발효사료에 대한 사료공장 HACCP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별지 제2호 서식)

#### □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 사료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료원료에 대한 사용가능증명서와 HACCP 지정 사료공장 증명서를 추가하고, 수출업자가 희망하는 서식으로도 수출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과정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사료원료에 대한 사용가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안 제2조, 제6조)
- HACCP 지정 사료공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안 제2조부터 제6조)
- 증명서 발급 범위 등 명확히 안내하여 발급기관의 책임행정 강화 및 민원인의 이해도 제고(안 제5조)
- 영문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서식 마련(안 제5조, 제6조)
- 수출업자가 희망하는 서식으로도 수출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안 제8조) ☞